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79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서삼석 · 윤준병 · 문금주
김원이 · 차지호 · 임미애
조인철 · 박용갑 · 이춘석
김성범 · 조계원 · 허영
이용선 · 정준호 · 김영진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 이후의 관리는 해양보호구역별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제15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상·해양의 30퍼센트 이상을 보호지역과 보호지역 외의 효과적인 보전

수단(OECM)으로 보전·관리하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정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고 보전·관리체계가 마련된 해역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대상 정보 확대 및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보호지역 외 해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해양보호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역으로서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등록된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4호의2 신설).
- 나.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대상 정보에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
-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마. 해양보호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역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보전 및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기타보전관리해역”이란 해양보호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역으로서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제42조의2에 따라 등록된 해역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식지 정보 등을”을 “서식지에 관한 정보, 보호지역(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 등을”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실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를 “제27조의2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를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로 한다.

제5장에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해양보호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닐 것
2.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관계 법령, 계획 또는 협약 등에 따른 보전·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타보전관리해역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보전 가치를 상실한 해역에 대하여는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해제 및 등록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기타보전관리해역의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기타보전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기타보전관리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내용, 비용 지원 및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u><신 설></u> 15. · 16. (생 략)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 · 보급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도,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이하 “해양생태계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제2조(정의) ----- -----.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기타보전관리해역”이란 <u>해양보호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역으로서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제42조의2에 따라 등록된 해역을 말한다.</u> 15. · 16. (현행과 같음)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① ----- ----- ----- --- <u>서식지에 관한 정보, 보호지역(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 등을</u> -----.

② ~ ④ (생략)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실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 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 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 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 구역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① -----제27조의 2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기본계 획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에 대 하여-----

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신설>

제36조(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① ~ ④ (생략)

⑤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생물의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의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
·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2(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해역을 기타보전관리
해역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해양보호구역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해당하
지 아니할 것

2.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
계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고 인정될 것

3. 관계 법령, 계획 또는 협약
등에 따른 보전·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타보전관리해역을 등록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타보전

<신 설>

관리해역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보전 가치를 상실한 해역에 대하여는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해제 및 등록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기타보전관리해역의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기타보전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기타보전관리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

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내용, 비용 지원 및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